

구미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2.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키며,
- 나. 조례 제정을 통하여 문화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 확보와 문화도시 조성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정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 나.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와 권리(안 제4조~제5조)
- 다.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라.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안 제8조~제14조)
- 마.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기능(안 제15조~제16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제15조, 제17조
「문화기본법」 제5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구미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문화기본법」에 따라 지역문화 발전을 통해 구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미시를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구미시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6조의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면서 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와 권리) ① 시민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문화적 가치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구성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의 권역별 균형 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견수렴) 시장은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 전문가 및 문화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문화도시 구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미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구성에 관한 주요시책 및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구미시의회 의원

2.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도시 담당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장소·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부서의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제13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용역·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 및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센터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센터의 기능) 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사업을 위한 기획·홍보·운영 및 인력관리 등
2. 문화도시 조성사업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센터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재정지원)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 및 지정에 관련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예비사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예비사업의 기간이 연장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지정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⑧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 예비사업의 실시 및 기간 연장, 문화도시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

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미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2. 비용추계의 전제

-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사업비, 기타비용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6차년도 (2027년)	7차년도 (2028년)	합계
기본계획 용역비 및 사업비	380							380
예비도시 추진비		420						420
문화도시 사업비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총 비용	380	420	4,000	4,000	4,000	4,000	4,000	20,800

4. 비용추계 상세내역

가. 기본계획 용역비 및 사업비 : 380백만원

- 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사업비 : 300백만원
- 인건비(문화도시센터) : 80백만원

나. 예비도시 추진비 : 420백만원

- 문화도시 조성 예비사업 추진비 : 300백만원
- 인건비(문화도시센터) : 120백만원

다. 문화도시 사업비 : 20,000백만원

- 문화도시 조성 사업비(2024년~2028년, 5년간) : 20,000백만원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6차년도 (2027년)	7차년도 (2028년)	합계
국비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도비								
시비	380	420	2,000	2,000	2,000	2,000	2,000	10,800
합계	380	420	4,000	4,000	4,000	4,000	4,000	20,800

6. 부대의견

- 세출 예산은 추정비로서, 여건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문화도시 지정에 따른 국비 등의 재원조달 가능

7. 작성자 : 문화예술과 문화도시TF팀 정소연

소 관 부 서		문화예술과
입 안 자	과 장	박 정 은
	담 당	김 혜 진
	담 당 자	정 소 연 (480-6638)